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검 토 보 고 서

2026. 3.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1. 제안경과

- 본 계획안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 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전임.

2. 제안이유

-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 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재산관리과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 치: 일패동 188번지 일원(남양주왕숙2 복합커뮤니티2)
- 부지면적: 2,673m²
- 건물규모: 연면적 약 740m²(가설건축물 1층, 2개동)

합 계	민원실 동장실	회의실	서고	전산실	창고	비상근무 대기실	식당	기타
740m ² (224평)	210	60	100	60	100	50	60	100

- 사업기간: 2026. 4 ~ 2026. 12.
- 소요예산: 25억원

계	부지매입비	공사비	용역비	감리비 등 기타
25	-	20	0.5	4.5

○ 토지현황

※ 지적분할 후 면적확정

소재지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계		27,522	2,673	
일패동 188	답	1,847	1,443	한국토지주택공사(4/5) 경기주택도시공사(1/5)
일패동 172-2	답	970	155	
일패동 172-3	답	905	585	
일패동 산13	임야	22,446	165	
일패동 172	구거	1,354	325	국(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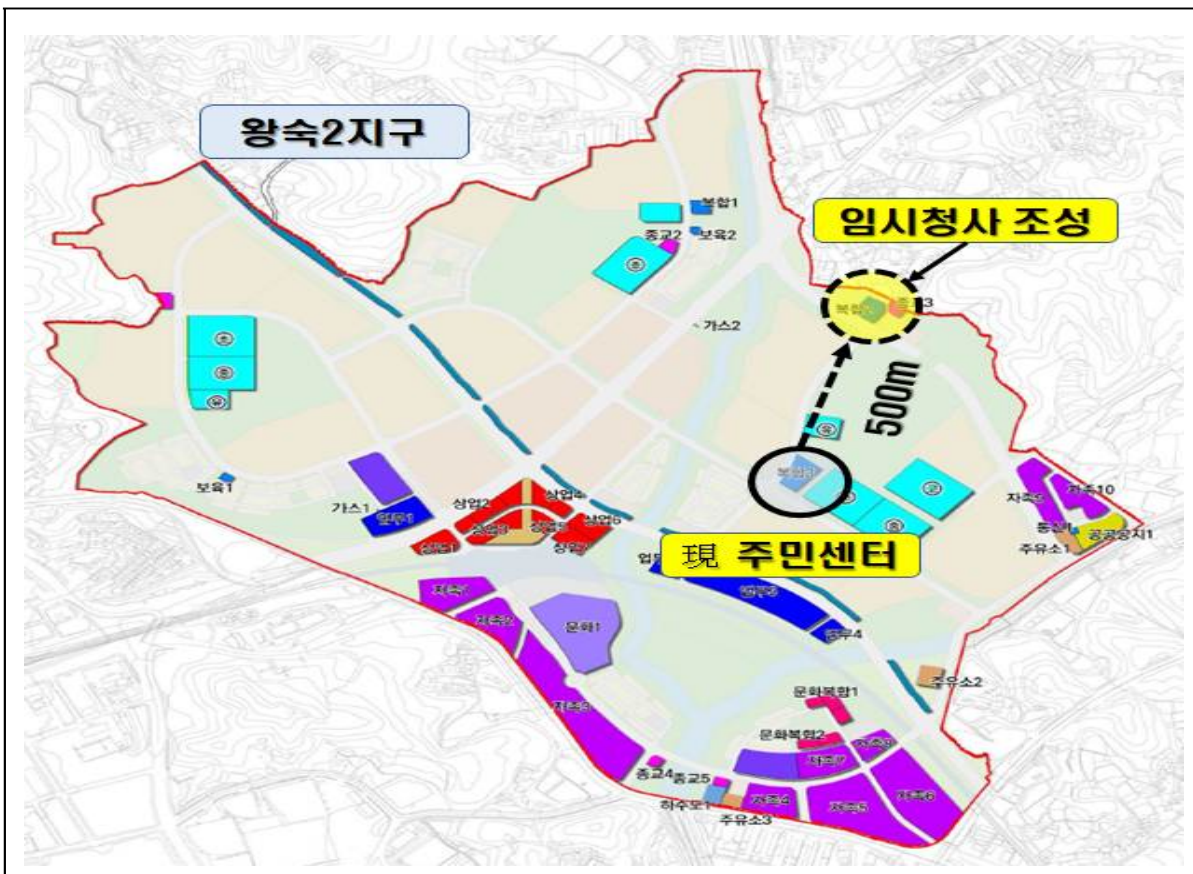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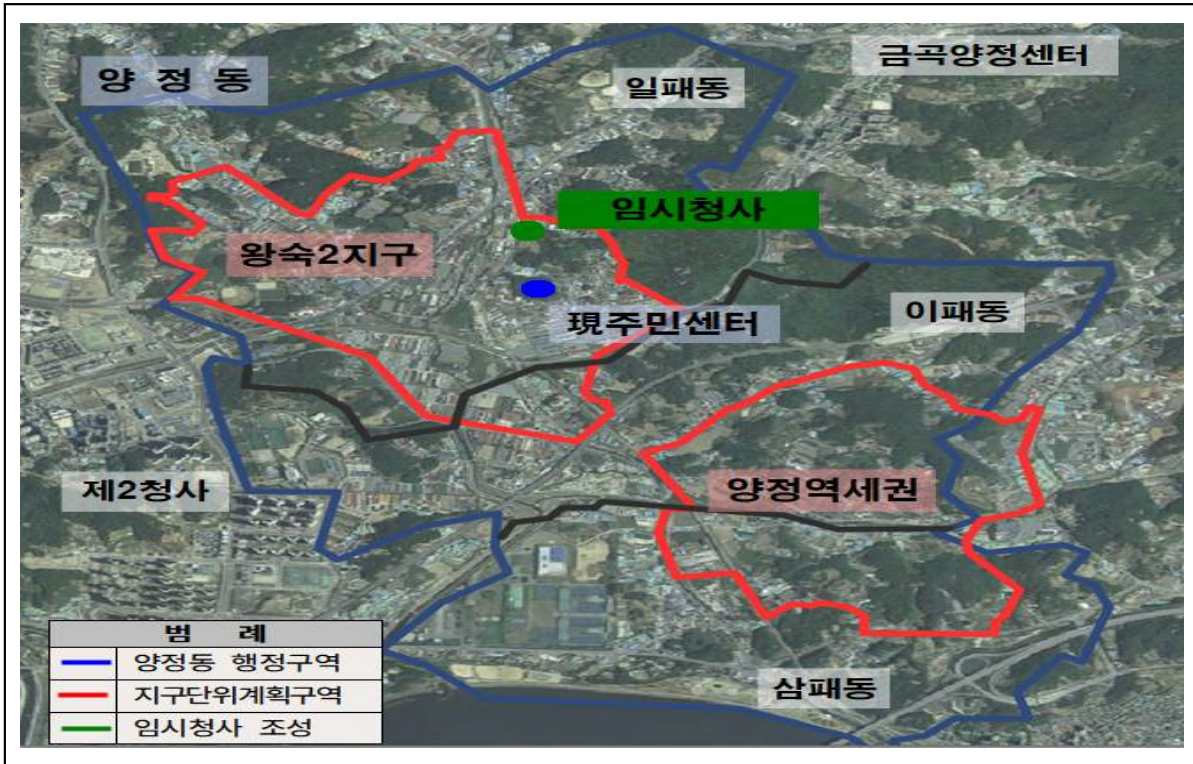
나) 추진현황

- 2025. 12. 9. : 토지 사용 협의 완료(GH)
- 2025. 12. 11. : 일상감사 완료(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2025. 12. 15. :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검토 보고
- 2026. 2. 25. : 공유재산심의회 원안 가결

다) 향후 추진계획

- 2026. 3.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제출
- 2026. 3. : 지방재정 투자심사(자체)
- 2026. 4. : 제1회 추경 사업비 25억원(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편성
- 2026. 4. : 실시설계 용역 수행
- 2026. 8. ~ 2026. 12. : 공사 추진

라) 위치도 및 지구단위계획도(남양주왕숙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관련부서 : 재산관리과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현 양정동 청사가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청사 이전이 필요하여, 일패동 188번지 일원에 양정동 임시청사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안임.
- 사업 내용은 왕숙2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 2부지에 연면적 740㎡ 규모의 1층 가설건축물 2개 동을 설치하여 민원실, 회의실 등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약 2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임.
- 그간 토지 사용 협의와 일상감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 공공주택지구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다만, 임시청사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용이 예상되는 만큼 청사 진입을 위한 현황도로 정비 등 이전 준비와 주민 이용 편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운영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9.19.>

4. <삭제 2022.9.19.>

5.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여부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려면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의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